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3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백혜련 · 맹성규 · 이재정
이강일 · 김영호 · 윤종균
염태영 · 이수진 · 남인순
김 윤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3호의 죄(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13호의 죄(1군 임시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
 - 가.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제2항의 죄
 - 나.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2항의 죄
 - 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죄
 -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 및 제333조의 죄

제60조제2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1호의 죄(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죄(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

제61조제2항 중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1호의 죄[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의 죄(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의 죄(대마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죄(2군 임시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벌칙) ① (생 략)</p> <p>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u>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p> <p>1.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u></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3호의 죄(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제13호의 죄(1군 임시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p> <p style="padding-left: 2em;">가.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제2항의 죄</p> <p style="padding-left: 2em;">나.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2항의 죄</p>

③·④ (생략)

제60조(벌칙) ①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신설>

<신설>

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죄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 및 제333조의 죄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1호의 죄(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죄(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또

③ (생략)

제61조(벌칙) ①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신설>

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제5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에게 제1항제1호의 죄[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의 죄(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의 죄(대마를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p>③ (생 략)</p>	<p><u>또는 같은 항 제8호의 죄(2군</u> <u>임시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u> <u>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u> <u>경우에 한정한다)를 범한 자</u></p> <p>③ (현행과 같음)</p>
----------------	---